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1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김주영 · 김영배
임미애 · 한민수 · 박민규
전용기 · 윤준병 · 김성범
이건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의장이 질문서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새로이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 등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직무 대행 규정이 없어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,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

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전단 중 “공고”를 “공고 및 제122조에 따른 정부에 대한 서면
질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 행)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 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<u>공</u> <u>고</u> 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.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 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 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 에 의장 · 부의장이 모두 궐위 (闕位)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	제14조(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 행) ----- ----- ----- <u>공고</u> <u>및 제122조에 따른 정부에 대한</u> <u>서면질문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